한별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제정 2021. 04. 0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한별고등학교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생의 인권보장 원칙)

-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의 인권은 학교생활에서 최대한 보장한다.
- ③ 학생의 인권은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
- ④ 학칙과 학교생활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제3조(학교구성원의 책임과 역할)

- ①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학교 공동체의 인권문화를 존중하고 실천하며, 학교 및 교원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이하 "교육활동"이라 한다)을 존중하고 협력하며 학생의 참여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제4조(학생의 권리)

모든 학생에게는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제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리가 있다.

- 1. 학습에 관한 권리
- 2.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 3.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 4.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 5.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6. 안전에 대한 권리
- 7. 휴식을 취할 권리
- 8. 개성을 실현할 권리
- 9. 사생활의 자유
- 10.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 11. 정보에 관한 권리
- 12. 양심·종교의 자유
- 13. 표현의 자유
- 14. 자치활동의 권리
- 15.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 16.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 17. 복지에 관한 권리
- 18.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 19. 문화활동에 참여할 권리
- 20. 급식에 대한 권리
- 21. 건강에 관한 권리
- 22.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 23. 상담과 조사 등 청구권
- 24. 그 밖에 보편타당한 권리

제5조(학생의 책임)

학생은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이 있다.

- 1. 학교구성원의 인권 존중 책임
- 2. 수업 등 교육활동에 성실히 참여 할 책임
- 3. 다른 사람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을 책임
- 4. 교원의 교육활동 및 교육적 권한을 존중 할 책임
- 5. 학교규칙과 규정 준수의 책임
- 6. 학생 서로 존중하여 학교 폭력을 일으키지 않을 책임
- 7. 바른말과 글을 쓰고 정보통신 윤리 준수의 책임
- 8. 수업 등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 사용 규칙을 지킬 책임

- 9. 학교 환경을 소중히 하고 학교 내 공공기물을 소중히 다룰 책임
- 10. 자신과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 노력할 책임
- 11. 그 밖에 보편타당한 학생의 책임

제3장 학생의 기본생활

제6조 (기본행동)

- ① 학교구성원 모두는 서로를 존중한다.
- ②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③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④ 다른 사람을 비하, 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글, 상징 등을 포함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 ⑤ 성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게 행동한다
- ⑥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 ⑦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인권 우호적 의사소통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제7조 (수업태도)

- ① 수업을 비롯한 교육활동의 시작과 끝 시간을 지킨다.
- ② 수업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수업 진행과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 ③ 교사의 허락 없이 해당 수업시간 이외의 내용을 공부하지 않는다
- ④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을 돌아다니지 않는다
- ⑤ 학생은 교원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 ⑥ 학생은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할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진다.
- ⑦ 학생은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허락 없이 실시간 송출, 녹화, 녹음 등을 하지 않는다.

제8조 (휴식시간과 여가활동)

①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들의 휴식시간(식사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장한다. 다만, 최소의 범위에서 교육활동, 생활지도 등을 할 수 있다.

-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으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을 지키는 것
- ② 학생은 휴식시간에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할 수 있다.
- ③ 학생은 휴식시간에 전산실, 음악실, 체육실, 도서실 등 특별실은 교원의 허락을 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규칙을 지킨다.
- ④ 교사의 허락없이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 ⑤ 학생은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9조 (용모)

① 학교는 학생의 두발 길이,모양,색상 등 용모를 제한하지 않는다.

제10조 (시설이용과 환경)

-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아끼고 학습도구를 소중히 사용한다.
- ② 방과후나 휴일에 학교 시설 이용은 학교의 장에게 허락을 얻는다.
- ③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다.
- ④ 쾌적한 수업과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제11조 (개인 소유물)

- ① 다른 학생과 교사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②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못 쓰게 만들거나 훔쳤을 때는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진다.

제12조(가지고 있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 학생은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을 가지고 있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하여 학교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

- 1.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2.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3.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한 각호의 소지·사용을 금지한 물품
- 가. 소지 금지 물품
- 1) 성냥, 라이터, 폭죽, 미용 기구(드라이기, 고데기) 등의 인화물질이나 전열기
-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물품
-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 4) 모든 형태의 도박 물품
- 5) 인권침해, 혐오표현, 폭력행위를 표현하는 물품
- 6)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각종 자료나 물품
-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 8) 그 밖에「청소년 보호법」제2조에 따른 매체물,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 등
- 나. 교육활동 중 사용 금지 물품
- 1)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이하 "전자기기"라 한다)
- 2) 과도한 소음 등을 발생시켜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도구 및 장치 등

제13조 (학생 개인물품 관리)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과 청소년이 소지하기에 부적절한 물품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 ② 교원은 사안이 처리된 후에는 보호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 ③ 학생이 수업 등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물품을 사용한 경우는 해당 수업 또는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제출하도록 하여 교원이 보관할 수 있다.
- ④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보관 방법 및 기한은 별표 1과 같다.

제14조 (전자기기 사용)

- ① 학생은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이하 "전자기기"라 한다)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활동에 필요하여 교원이 허가한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
- ②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이 전자기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방해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자기기를 수거·관리할 수 있다.

제15조 (정보통신 윤리)

- ① 학생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정보와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 ② 학생은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③ 학생은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를 공유하거나 학교에 가지고 오지 않는다.

- ④ 학생은 다른 사람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⑤ 학생은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16조 (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다른 사람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때,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책임진다. 학생의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제4장 생활지도

제17조 (교사의 권한)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① 교육적 상담과 조언
- ② 교육환경 조성
- ③ 행동개선 요구
- ④ 훈계, 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 ⑤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요구와 의견 제출
- ⑥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제18조(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고시 제5조에 따른 학업 및 진로·제6조에 따른 보건 및 안전·제7조에 따른 인성 및 대인관계·제8조에 따른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제19조(생활지도의 방식)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고시 제9조에 따른 조언·제10조에 따른 상담·제11조에 따른 주의·제12조에 따른 훈육·제13조에 따른 훈계 등의 방식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의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② 고시 제12조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와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조치에 관한 장소·시간 및 학습지 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행동 변화가 없는 경우 제34조, 제41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20조 (조언)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21조 (상담)

- 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협의되지 않은 상담
-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주의)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미인정 조퇴, 지각, 결석을 1회 이상 한 학생에게 주의를 줄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면,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23조 (훈육)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 1.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
- 2. 수업시간 중 교실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지정된 장소 : 본교무실)
-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⑥ 학교의 장은 5항 제 3호 및 제 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할 수 있다.
- ⑦ 교원은 제 5항 제3호·제4호 및 제27조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⑨ 학교의 장과 교원은 미인정 조퇴, 지각, 결석을 2회 이상 한 학생에게 훈육을 할 수 있다.
- ⑧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 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 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24조 (훈계)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 ②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향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 1. 자리에 일으켜 세우기
- 2. 성찰하는 글쓰기
- 3. 적정한 수준의 학습과제 부여 또는 방과후 교육
- 4. 망가진 시설, 물품, 오염 등에 대한 청소 및 원상복구 요구(벌 청소 금지)
- 5. 기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마련한 인권우호적인 교육적 조치 (ex.명심보감(좋은글귀) 필사)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미인정 조퇴, 지각, 결석을 3회 이상 한 학생에게 훈계를 할수 있다.
- ⑤ 교사가 상담과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 (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26조(소지품 검사)

- ① 교원은 학생이 제12조에 따른 가지고 있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소지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학생(전 학년·특정 학년·특정 집단 등) 대상으로 정기 적·일괄적으로 검사해서는 안 된다.
- ② 교원이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때는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른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이 되는 합리적인 이유(특정화된 감이나 불특정한의심이 아닌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에 기반한 의혹)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있다.
- ③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 ④ 교원은 소지품 검사 과정에서 학생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낄만한 표현이나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한다.

제27조 (소지품 관리지도)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26조에 해당하는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 ③ 교사는 교육활동 시간에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게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학생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④ 학생이 교육활동 시간에 허락을 받지않고 전자기기를 사용하면 교사가 주의를 줄수 있으며, 학생이 주의를 2회 받으면 정규 교육활동시간에 한해 해당시간에 해당 전

자기기를 보관 조치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보관조치가 3회 이상일 때 또는 학생이 전자기기 제출을 거부했을 때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고사(시험)기간동안 전자기기는 등교할 때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고사(시험) 중 전자기기를 지니고 있거나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제28조 (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와 징계

- 제29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포상 대상 학생 선발 등 학생 포상에 관한 사항
 - . 「초·중등교육법」제18조(학생의 징계),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및 이 규정 제21조에 따른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
 - 2. 그 밖에 학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3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인성인권부장을 부위원장, 생활교육 업무담당자, 각 학년 업무담당자, 인성인권부교사, 및 학교장이 임명한 교사(교무부장, 진로진학상담부교사)로 하되, 인성인권 업무담당자를 간사로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 초부터 말까지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구성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제3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1. 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개최의 일시, 장소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가 된다.
-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⑥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① 학생의 생활교육과 징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인성인권부장, 생활교육 업무담당자, 각 학년 업무담당자, 인성인권부교사, 및 학교장이 임명한 교사(교무부장, 진로진학상담부교사)로 하되, 인성인권 업무담당자를 간사로 한다.
- ③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담당교사나 담임교사에게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듣고,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3조 (징계원칙)

- ①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 ②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둔다.
- ③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행동과 교육적인 면을 고려한다.

제34조(학생 징계)

- ①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제18조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1. 학교내의 봉사: 10일(20시간)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2. 사회봉사: 10일(20시간)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3. 특별교육이수: 5일 이상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5. 퇴학처분
- ② 제1항에 따른 학생의 징계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 1. 징계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 2. 징계 행위를 한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 3. 징계 행위를 한 학생과 피해를 입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 정도
 - 4. 징계 학생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임신 여부, 장애 여부, 노약자 등 여부 및 그 정도
 - 5. 징계 행위를 한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 ③ 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함
 - 2.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중
 - 3.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함
 - 4. 제20조에 따른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침
- ④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5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해당 사안과 관련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2.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된 사람인 경우
-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36조 (징계방법)

- ① '학교내 봉사'는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수업전후, 점심시간 등) 실시한다
- ②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대상학생이 위탁기관에 불참 또는 이탈한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하고 가중 처벌한다.
- ③ '특별교육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한다. 교육이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하고 가중 처벌한다.
- ④ '출석정지'는 출석정지 처분기간(가정학습 특별교육 과제 조치 포함)을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며,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⑤ 퇴학처분 : 퇴학처분을 할 때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퇴학처분 대상 학생
 - 가. 중대한 과실을 범한 학생
 - 나. 결석이 수업일수의 1/3을 초과한 학생
 - 다. 학칙을 여러차례 위반하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는 학생
 - 1.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2.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할 때는 당해 학생,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해야 하며,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사회교육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 3. 학교의 장은 학업중단 의사가 있는 학생에게 반드시 학업중단숙려제를 안내해야 한다.
- ⑥ 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이수는 보호자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하여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하며, 학교나 해당 기관의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학교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37조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

- ① 학교 내 봉사
 - 1. 학교환경 정리활동
 - 2. 교내도서관 도서, 교재, 교구 정비
 - 3. 인성 인권교육 차원의 프로그램 등

② 사회봉사

-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③ 특별교육이수

-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학생교육 관련 학부모 상 담 근거 기록
-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 마약 치료학교 등의 교육이수
- 3. 행동 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은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 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교육 이수
- 4.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이수
- 5.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하는 개별 교육 이수

④ 출석정지

- 1. 학교는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 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 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 2. 출석정지로 보호자 요청에 또른 가정학습 기간 동안 학부모와 동반한 사회봉사 20 시간 이상 이수한 증명서(실사확인)와 가정학습 특별교육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제출하면 그 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제38조 (징계통보와 진술권 보장)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과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 품성, 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에게 듣는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 ③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유선 통화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39조 (심의 확정과 재심요구)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 차원에서 징계 여부와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징계의 여부와 종류를 결정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 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교육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징계 결과가 통보된 후 5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⑤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40조 (징계 경감과 해제)

- ① 학교의 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해당 학생이 문제 행동을 고칠 의지가 뚜렷하다고 인정될 때는 처벌의 경감 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②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고사(시험)에 응시하되, 시험 참여 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제41조 (교육처분의 기준)

			징 계				
구분	항	내 용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퇴학
	41-1	교사에게 조롱 및 폭언과 욕설을 한 학생	0	0	0	0	0
예절	41-2	교사의 교육적 지도에 불응한 학생	0	0	0	0	0
세결	41-3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여지가 없는 학생				0	0
	41-4	학생을 선동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학생				0	0
	41-5	학교의 기물을 파손한 학생	0	0	0		
	41-6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및 소위원회 징계에 불응한학생			0	0	0
준법	41-7	인장 및 제 증명·공공문서를 위조하거나 나쁜 목 적으로 사용·대여한 학생	0	0	0	0	
	41-8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해약물 등 및 청소년 유해업소등을 배포, 시 청, 섭취, 출입한 학생	0	0	0	0	
근태	41-9	미인정결과,조퇴,지각,결석이 5회 이상인 학생	0	0	0		
	41-10	수업태도가 불량(예: 수업 중 전자기기 무단사용) 하여 타인의 학습권을 침해한 학생	0	0	0	0	
수업	41-11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동조한 학생 ※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0	0	0
	41-12	시험문제를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0	0	0
약물	41-13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0	0	0	0	0
ㄱㄹ	41-14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0	0	0	0	0
금품	41-15	불법도박 및 비정상적인 경로(예: 핸드폰 부가서비 스 등)로 금전적 이득 및 각종 이득을 취한 학생	0	0	0	0	0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강탈한 학생	0	0	0	0	0
	41-17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실추시킨 학생	0	0	0	0	
	41-18	오토바이 및 자동차를 타고 등교한 학생(무면허 운 전 시 가중처벌)	0	0	0	0	0
	41-19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0	0	0	0	0
	41-20	외부인(타학교 학생 포함)의 학교 출입을 사전 허가 없이 주도하여 교내에서 물의를 일으킨 학생		0	0		
기타		기타 불미스런 행동(불법행위)으로 학교의 명예를 크					
	41-21	게 실추시킨 학생			0	0	0
	41-22	사전허가 없이 불량써클 및 모임을 조직하여 교칙에 위반하는 행동을 일삼은 학생			0	0	0
	41-23	(선도)징계 기준 외 경·중사안의 경우 학생생활교육위 원회의 심의를 통해 의결	0	0	0	0	0

제5장 학생생활규정의 개정

제42조(학생생활규정 개정)

- ①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의 범위에서 학생생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한별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 2. 관련 법령(법률·대통령령·부령, 자치법규, 행정규칙을 포함한다) 및 지침에 따라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 3. 그 밖에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표는 교장에게 규정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1. 교원협의회의 의결
 - 2. 학부모회의 의결
 - 3. 학생자치회의 의결
 - 4. 제24조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의 의결
- ③ 교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정의 개정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24조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에 안건 제출 여부를 결정하고, 요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④ 교장은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학생자치회의 회의
 - 2. 학부모회, 학부모회 분과(分課) 모임 등의 회의
 - 3. 교원협의회, 교사협의회 등의 회의
 - 4. 그 밖에 학교누리집,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

제43조(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 ① 학생생활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이하 이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학생생활규정의 제정·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검토
- 2. 학생생활규정안의 검토, 의견수렴, 설문조사 등의 절차와 방법

- 3. 학생생활규정안의 제정·개정을 위한 토론회, 공청회 등 주관
- 4. 학생생활규정안의 확정
- 5. 학생, 학부모 및 교원 대상 학생생활규정 연수·홍보
- 6. 학생생활규정과 관련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등에 대한 심의
- 7. 학생 구성원의 학생생활규정 준수 및 실천 정도 평가
- 8. 그 밖에 학생생활규정과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학생대표로 구성하며,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대표 위원이 전체의 10분의 4이상이 되도록 한다.
 - 학교의 규모의 따라 학생위원 참여 인원 수를 정할 수 있으며,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제19조에 따라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 초부터 말까지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구성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⑥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1.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가 된다.
- 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⑩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4조 (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발의할 수 있다.

- 1. 위원회의 재적 위원의 과반수
- 2. 교사회의 의결
- 3. 학부모회의 의결
- 4. 학생회의 의결
-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에 따른 학교장 발의

제45조 (문헌조사와 의견수렴)

- ① 위원회는 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문헌조사와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46조 (심의와 결정)

- ① 위원회는 학교생활규정개정안을 발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확정하여 학교운영위 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제47조 (연수와 교육) 개정한 학교생활규정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또는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내용을 안내한다.

제6장 기타

제48조 (특수교육 대상자의 생활지도)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관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49조 (이의제기)

-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제 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답변하고 그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 제1조 이 규정은 공포일(2021.04.09.)부터 시행한다.
- 제2조 2022년 3월 개정되어 2022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제3조 2023년 9월 개정되어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4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 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 한별고등학교 학생의 학생생활에 관한 규정 [별표 1]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할 수 있는 물품의 보관 방법(제12조

관련)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고시)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 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1회차 : 주의 실시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수업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 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교무실 등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하고, 분리 물품에 대해 학부모에게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 생에게 판매될 수 없 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3일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안내하며 학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 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 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 기 조치		

■ 한별고등학교 학생의 학생생활에 관한 규정 [별표 2]

학생 분리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 (제16조 관련)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3호	가	1호 또는 2호 지도 에도 불구하고 교육활 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 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명심보감 필사 등 과제 부여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나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교장실, 교무실 등 학교의 장이 지정한 교내 별도의 장소 (수업 종료 시 까지)	○ 교사가 학교의 장에게 학생 인계 요청 ○ 학교의 장 책임하에 관리자가 지정 장소 로 이동 및 지도 ○ 단, 관리자 부재 시 교직원이 협력하여 학생 분리 및 지도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명심보감 필 사 등 과제 부여			
4호 지도	가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 간(20분) 보장	교과서 요약, 명심보감 필사 등 과제 부여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나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 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 리및지도가필요한경우	<u>교장실</u> , 교무실 등 학교의 장이 지정한 교내 별도의 장소 (60분 이내)	학교의 장이 학부모 에게 지도 시간과 사 유를 사전에 통지함	행동성찰문, 명심보감 필사 등 과제 부여			
기타	- 지각은 수업 시작 후 5분으로 함(학교 여건에 따라 정함) - 분리 시간은 수업 종료 시까지(단, 학생이 수업 종료 전이라도 수업에 참여할 준비가 분경우 학급으로 복귀 가능 등 상황에 맞게 수정 가능) -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시간대별로 교직원이 분담하는 방식 등 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유의점	- 고의적으로 교실 밖으로 분리 조치 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리 장소 선정 시 학생들의 선호 장소는 가급적 제외, 분리 공간의 환경과 안전(시설, 위험도구 등) 등을 확인 - 학칙으로 적절한 분리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실시하고 필요 이상의 지나친 분리는 자제							
	- 분리가 실시되는 동안 학생만 특정 공간에 방치하지 않아야 함							